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.

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20,645톤에서 40,645톤으로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3. 5. 8. ~ 5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의 0713란 앞에 0703란, 0703.10란, 0703.10.10란, 0703.10.1010란, 0703.10.1090란, 0712란 및 0712.20.00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0703	***		양파·샬롯(shallot)·마늘·리크. (leek)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 신선한 양파	신선한 양파	신선한 양파
0703	10		양파와 샬롯(shallot)	기준 20,645톤	기준 20,000톤	기준 40,645톤
0703	10	10	양파	20,010 E	20,000 E	10,010 =
0703	10	1010	껍질을 벗긴 것			
0703	10	1090	기타			
0712			건조한 채소(원래 모양인 것, 절 단한 것, 얇게 썬 것, 부순 것, 가 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,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)			
0712	20	0000	양파			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적용시한) 별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